

「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1월 13일, 지광천의원 대표발의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1월 1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광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평창군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규칙의 목적(안 제1조)
-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, 수사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(안 제2조)
- 의원면직 처리시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(안 제3조 ~ 제4조)
-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규정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#### ○ 본 규칙안은

평창군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.

#### ○ 규칙안 주요내용은

안 제2조에서는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, 수사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 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

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의원면직 처리 시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

안 제5조에서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.

검토결과,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의회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부.

##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평창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**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
2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3. 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
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

**제3조(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)**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

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반자에 대한 문책)** 평창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)** 평창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